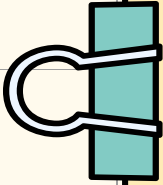


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

변경 · 중지

신청안내 ✨

- 
- ✓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
 - ✓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

✓ 변경·중지 신청안내

- 변경/중지신청 해당자는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금 지급 보류됩니다 -

〈 변경·중지 유의사항 〉

✓ 변경대상

- 주소지 임대차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

※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어 변경 신고하는 경우, 변경사유가 발생한 월은 종전계약 내용대로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내용은 익월부터 적용

✓ 중지대상

-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(서울시외 타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해도 동일)
- 공공임대주택 거주, 부모 합가,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
- 국민기초생활수급, 서울시 청년수당,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, 자립준비청년 월세/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사업 동시 수혜
- 주택 구매, 전세 거주 등 월세 주거비 지원 사유 소멸
-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,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※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 중지됨

(단, 유사사업 동시 수혜의 경우 → 동시 수혜 발생 월부터 지급 중지)

※ 지급 중지 이후 재개시, 재신청은 불가하며 잔여 지원금은 소멸됨

✓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

- 신청기간 : 2026. 8. 13.(목) ~ 8. 18.(화) 24시까지
- 신청방법 :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> 신청현황 보기 > 변경신청 >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

일반주택(임대차계약서 작성한 경우)

- ① 임대차계약서(이사간 곳에서 새로 작성한 월세계약서)
※ 반드시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어야 함
- ②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이력 포함)

고시원, 셰어하우스 등

- ① 입실확인서(실거주 확인서)
※ 신청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소재지, 보증금, 월세금액, 계약일자 모두 기재 필요
- ②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이력 포함)
-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(해당 소재지를 사업지로 하는)

*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: 오프라인(동주민센터 방문), 온라인(정부24 접속 > 주민등록표등본(초본)발급 > 다른 유형 펼쳐보기 > 주민등록초본 발급 선택 후 전체발급 선택